

#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(황주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9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8. 9.

발의자 : 황주홍 · 이찬열 · 김철민  
손금주 · 김수민 · 김경진  
윤관석 · 박홍근 · 강창일  
이동섭 · 홍문표 · 김동철  
주승용 · 이종걸 · 유성엽  
김삼화 · 민홍철 · 최경환  
의원(18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  
· 사용하려는 경우 외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·  
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공유수면에서의 각종 재난 · 사고에 대  
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조난 선박의 구난작업 및 재난발생 예방 등을 위한 응급조치  
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유수면 점용 · 사용허가를  
면제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1항 단서).

법률 제 호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28조”를 “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·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